

『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7년 11월 17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7년 11월 20일

라. 상정일자 : 2017년 11월 28일

제218회 구미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 설명의 요지

가. 제안 설명자 : 건설도시국장 설 동 주

나. 제안이유

-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도로점용료 감면대상을 추가하고, 2개 연도 이상 도로 점용하는 경우의 연간점용료 증가율을 제한하여 주민의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완화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 개정
 - 상위 법령 인용 조문 변경(안 제2조)
 -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 제30조제3항 → 제30조제4항
 - 2년 이상 도로점용시 연간점용료 증가율 개정(안 제3조)

- 현행 :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「도로법 시행령」
별표 4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따라 계산함
- 개정 : 100분의 10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전년도에 납부한 연간
점용료보다 100분의 10으로 증가된 금액으로 함
- 오피스텔 등 준주택 출입시설의 점용료 감면 규정 신설(안 제4조)
 - 「도로법」 제68조제4호의2
-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문장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도로법」 및 같은 법 시행령, 「국유재산법 시행령」,
「주택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, 기획예산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김 영 수

- 본 「구미시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은
 - 상위법인 「도로법」 개정에 따라 오피스텔 등 준 주택 출입시설의
점용료를 도로 점용료 감면대상에 추가하고, 2년 이상 도로
점용시 연간점용료 증가율을 10%이상 30%이하에서 10%정액으로
완화하여 주민의 금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출된 일부개정
조례안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